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199호
- 발의자 : 황철규 의원
- 발의일자 : 2025년 10월 20일
-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 II.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록물 관리 체계가 「서울특별시교육청기록관 운영 규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어 법령 간 불일치와 중복 운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현행 조례 일부 조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삭제·정비 권고를 받은 바 있음.
-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하고 효율적이며 통합적인 기록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와 훈령을 통합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III.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기록관의 설치 및 관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주요기록물의 전자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기록물의 열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록물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입법예고(2025. 10. 28. ~ 11. 1.) 결과 : 의견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황철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199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기록물 관리 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법령 불일치 및 운영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정비 권고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와 훈령을 통합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 · 도교육청이 국가기록원의 기준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영구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 기록물도 관할 교육청 · 교육지원청 기록관을 통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sup>1)</sup>.

---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 · 관리)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 ·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제6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①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록물 관리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국가기록원장에게 기록관리의 현황을 매년 제출해야 하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기록관은 기록물을 등록 및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sup>2)</sup>.
- 또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는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sup>3)</sup>, 학교 기록물 역시 교육청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전제로 하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①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제10조(기록관의 설치)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5호에 따른 학교 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가. 국립학교: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대학·교육대학부설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교육대학의 기록관을 말한다)

나. 공·사립학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제20조(기록물의 등록)①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3조(기록관리 평가)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기관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전년도의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관리현황을 포함한 그 기관의 전년도의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관리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년도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년 제출받은 기록관리현황을 평가한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록관의 설치)①법 제13조 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기관 및 소속 기관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한다(생략).

7. 시·도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위법령의 정비 흐름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기록관 설치,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평가·폐기 절차 등을 하나의 조례에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sup>4)</sup>.

### [표-1] 전국 시·도교육청 기록물관리 규정(조례 및 훈령) 운영 현황

(2025.11.19. 기준)

구분	조례 및 규정명	시행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 7.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2021. 5.26.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2021. 6. 4.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운영 규정	2016.11.14.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	2017.12.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	2024. 6.28.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2017. 7.17.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2025. 2.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2020. 5.29.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	2021. 9.23.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2021. 9.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6.23.

\* 대구·울산·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경상북도교육청은 「기록물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기록물관리 전체를 규정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을 훈령(이하 「훈령」)으로 운영중이며, 학교 기록물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기록물 보존 지원 조례」(이하

#### ②~⑤ (생략)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5호에 따른 학교 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0. 3. 31.>

1.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가. 국립학교: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대학·교육대학부설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교육대학의 기록관을 말한다)  
나. 공·사립학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4) 현재 학교기록물을 별도 조례로 두고 있는 곳은 서울과 제주뿐이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를 2024.6.28. 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학교기록물 조례’ )로서 운영되어 법체계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학교기록물 조례 제정 당시 국가기록원은 기록물에 대한 인수·검수 절차를 학교에 위임하고 학교에서 기록물을 보존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학교기록물 조례 제5조제2항을 삭제하라는 요청을 지속해서 권고했습니다<sup>5)</sup>.
- 따라서 동 조례안은 이원화되어 있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단일 규범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기록관리의 일관성·법적 안정성·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는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안 제1조~제4조)에서는 목적, 적용범위, 정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 등 기록관리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장(안 제5조~제9조)에서는 기록관의 설치·관할, 기록관의 업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운영, 시스템 운영,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등 기록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장(안 제10조~제12조)에서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하여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기록관 운영 규정(훈령) 정비 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2025.7.

- “교육감과 교육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라, 동 조례 제5조제2항의 “학교기록물의 인수 및 검수 절차를 위임하여 해당 학교에 보존하도록 할 수 있다” 부분이 공공기록물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삭제 정비를 권고하였음.

- 제4장(안 제13조~제17조)에서는 주요 기록물의 전자화, 보관·열람, 보존시설 관리, 기록물의 활용·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여 기록물 관리 및 활용 체계의 구체적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규칙에 위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장 적용의 탄력성과 행정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조문 구성, 체계 및 내용 배열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원칙에 부합하며, 체계적 정합성과 조문 간 논리 흐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교육감이 상위법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하 “서울교육기록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기록물관리관의 장인 “서울교육기록원장”이 교육감의 명을 받아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교육행정기록물 및 학교역사기록물을 수집·보존·관리하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시·도교육감이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전문적 관리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상 이러한 기관을 통칭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sup>6)</sup>.

---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현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

-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기록관리 체계는 「서울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라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의 기록관만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은 별도의 설치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안 제4조는 상위법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안 제4조는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조문으로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향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시 조직 구성, 운영 기준, 단계적 확대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기록관의 설치 및 관할, 주요업무에 대한 검토(안 제5조, 제6조)

- 안 제5조는 본청 기록관을 총무과에, 교육지원청 기록관은 각 교육지 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록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시·도기록물관리기관(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관 기록물을 시·도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제5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다만, 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의 지도로 한정한다.
  4.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7. 삭제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⑧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기록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이관, 그 밖에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원청 행정지원과에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관장은 해당 부서장이 맡아(총무과장 · 행정지원과장) 소관 기록물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록관장인 총무과장은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록물의 생산 · 등록 · 보존 · 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 제5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의 설치 · 운영)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기록관의 설치)에 근거하여<sup>7)</sup>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의 기록관 설치 · 운영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를 반영하여 기록관 설치 · 운영의 기본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sup>①</sup>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 ·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 · 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 · 훈련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 · 협조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록관의 설치)<sup>①</sup> 법 제13조 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기관 및 소속 기관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 7. 시 · 도 교육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② 제1항에 따른 기록관의 설치 · 운영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5호에 따른 학교 중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아교육법」 및 「초 · 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 가. 국립학교: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대학 · 교육대학부설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 · 교육대학의 기록관을 말한다)
  - 나. 공 · 사립학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 다만, 학교는 본청·교육지원청과 달리 독립된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기록물관리 조직·인력 구조가 상이할 것으로 보이는바, 학교 단위 기록물 관리의 구체적 절차(기록물 등록·이관 기한, 정리 방식, 책임자 지정 범위 등)는 조례보다 하위규칙 또는 내부 운영지침에서 보완하는 것이 행정운영상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6조는 기록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훈령 제5조의 규정을 정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서울교육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검토(안 제7조)

- 안 제7조는 교육감이 서울교육 관련 기록정보자원을 통합 검색·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기록관장은 기관·처리과의 변천과정을 실시간 반영하여 이용자 열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항).
  - 또한 기록물 기반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방식과(제3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 이러한 내용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공개 및 활용 촉진 의무와 부합하며,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평가 체계(기록물 관리 기반·생산·보존·이용 편의성 강화)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합니다<sup>8)</sup>.
- 특히 최근 정부가 AI·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여 기록물 디지털화 확대, 통합검색 기반의 기록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역시 기록물 서비스

---

8)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평가지표 설명자료('26년도('25년 실적)),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 2024.12.

의 전자화·통합화를 강화하고 있는바, 동 조항은 이러한 정책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sup>9)</sup>.

- 다만,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저작권·개인정보 등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하위규칙에서 관련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5)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한 검토(안 제9조)

- 안 제9조는 교육감이 교육과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기증·위탁·사본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집·보존 절차와 기준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보존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sup>10)</sup>,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 특히, 안 제9조제2항은 기증이 곤란하거나 소유자가 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위탁 또는 사본제작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규정」에서 인정하는 사본수집 원칙과도 부합합니다<sup>11)</sup>.

9) AI 대전환 시기에 기록물 디지털화 협업, 국가기록원·법무부, 2025.6.23., 기록물 통합관리,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전면 클라우드 플랫폼화, 행정안전부, 2023.3.21.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11)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수집원칙) 국가기록원이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 생산 당시의 원본 그대로 수집한다.
2.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사본수집) ① 국가기록원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기록물을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의 방법으로 사본수집할 수

- 무엇보다 교육기관 민간기록물의 경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소유권·저작권 관계가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외적 사본수집을 허용한 것은 현실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안 제9제3항에서 유형·보존상태·권리관계 등에 따라 구체적 수집 절차를 하위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조례와 규칙 간 위임구조에도 적합하고 실무 운영상 탄력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 6) 기록물평가심의회 기능, 구성·운영 관련 검토(안 제10조~제11조)

- 안 제10조는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폐기·보존기간 재책정·보류여부, 그 밖의 기록물 평가·폐기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11조는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선출하고 전체 5명 중 2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기록물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이는 당초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조례에 재규정한 것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심의회 설치 의무와 민간전문가 참여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sup>12)</sup>

---

있다.

② 국가기록원장은 사본수집 시제15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사본수집 시 해당 기록물을 소장한 개인 또는 단체 등과 사용권한 또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1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①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기록물평가심의회)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다만, 안 제11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교육지원청 내부위원 직위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2025.7.1.자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직위로 확인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해당 기능은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조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sup>13)</sup>.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내부위원 직위에 관하여 “2025. 7. 1.자로 교육지원청이 조직개편되어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폐지되었으므로, ‘학교생활교육과장’ 아닌 교육지원국 주무부서인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10.30.).
  - 이후 추가로 제출의견의 사유를 확인한 결과, 교육청은 2019년 학교통합지원센터 신설 이전부터 교육지원청 심의회 내부위원을 ‘행정지원과장’과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위촉했던 훈령을 근거로, 내부위원은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의 주무부서장이 담당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sup>14)</sup>.
- 그러나 안 제11조에서 본청 내부위원을 ‘총무과장’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으로 구성한 것은 기록물관리 주무부서(총무과)와 학교폭력 등 학생생활 관련 민감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기능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교육지원청 역시 학생생활·학교폭력 등 관련 업무는 학교생활교육과

---

②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 전문가, 소속 공무원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③그 밖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정한다.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01호, 2025.6.26. 일부개정, 2025.7.1. 시행)에서는 제58조제1항·제2항을 개정하여 교육지원국 소속 하위조직을 조정하였으며, 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학교생활교육과·학생맞춤협력과를 두도록 규정함. 또한 같은 조 제5항(종전 제3항)에서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을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개정하였고, 일부 직위 및 기능 조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10호, 제12호 등)을 정비하여 조직개편 사항을 공포하였음.

14) 본 의견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의안번호 제3199호) 교육청 의견 회신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임(요구자료 3081, 2025.12.10. 제출).

가 주로 담당하고 있어, 제출의견에서 제시한 ‘초등교육지원과장’과는 기능적 연관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같이 내부위원 직위에 대하여 시행규칙상 실제 직제 변화와 교육청이 제시한 운영상 필요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바, 해당 직위는 조직개편으로 조정된 직제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에 요구되는 기능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7) 부칙(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의 부칙은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록물 관리 체계를 단일 조례로 일원화하기 위한 후속 정비 절차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역시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례로 대체하거나 관련 조례를 통합하는 경우, 신설 조례의 부칙에서 기존 조례의 폐지 규정을 명시하여 단일 입법으로 정비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sup>15)</sup>.
  - 따라서 동 조례안에서 현행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부칙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부처의 입법기준에 부합하며, 기록물관리 체계의 통합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현주(2180-8272)
----------	----------------	-------	----------------

15)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296.